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80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승수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7. 18.

다.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위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가. 개정안 요지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50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급분류)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2. ----- ----- -----. <u><단서 삭제></u>

<u>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u> 3. ~ 5. (생략) ② ~ ⑥ (생략) <u><신설></u> ⑦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음악영상물과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악 영상물이나 음악영상파일¹⁾도 비디오물²⁾에 해당하는바 음악영상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³⁾

○ 그런데 음악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사전 심의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어⁴⁾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여 홍보하는 음악업계의 빠른 유통주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⁵⁾

○ 이에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581호)에서는 일반 비디오물과 달리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 5. (생략)

4) 【2021년~2025년 6월말 기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일) 평균	처리기간 최소	처리기간 최장
2021년	1.94	1	4
2022년	2.20	1	5
2023년	2.15	1	4
2024년	2.30	1	4
2025년 6월	2.40	2	4

5) 김휘정,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4; 임효준, 현행 음악영상물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디어와 인격권 제3권 제2호, 언론중재위원회, 2017 등

-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적절성에 대한 사후관리만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음악영상물(음악산업법 개정안)과 비디오물 등급분류 제도 비교]

구분	음악영상물(음악산업법 개정안)	비디오물
법적근거	음악법 안 제17조(등급분류)	영화비디오법 제50조(등급분류)
대상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비디오물
주체	사전(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자) /사후(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전체/12세/15세/청불	전체/12세/15세/청불/제한관람가

- 이에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입법 정비로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를 도입하는 것은 매체 특성, 타 콘텐츠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나, 다만, 음악영상물 등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만 시청제공이 이루어지는 OTT 플랫폼과 달리, 공급

과 시청제공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매체특성상 유통속도가 빠르고 과급력이 높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관리 방법과 사후조치 수단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